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I. 예산개요

예산규모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05억 6,20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637억 1,628만원 대비 약 4.6%인 168억 4,57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5.6%인 163억 2,371만원이 늘어난 3,090억 9,114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약 0.7%인 52억 2,083만원이 증액된 714억 7,094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3년 제2회추경안	구성비	2003년 제1회 추경안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80,562,079	100	363,716,285	100	16,845,794	4.6
일반회계	309,091,139	81.2	292,767,428	80.5	16,323,711	5.6
특별회계	71,470,940	18.8	70,948,857	19.5	522,083	0.7

세입예산

< 일반회계 >

-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168억 4,579만원중 일반회계 163억 2,371만원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양여금과 지방채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 지 방 세 41억 6,200만원 (기정대비 5.5%↑)
- 세 외 수 입 57억 5,438만원 (기정대비 9.0%↑)
- 지방교부세 31억 3,870만원 (기정대비 7.4%↑)
- 조정교부금 35억 2,000만원 (기정대비 13.5%↑)등이 증액편성 됐고
- 보 조 금 △2억 5,137만원 (기정대비 0.3%↓)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 금번 일반회계 추정 세입예산액은 약 39.3%가 의존재원으로 충당 되었음.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A)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B)	증·감액 (C=A-B)	증·감율 (B/C)
합 계	309,091,139	292,767,428	16,323,711	5.6
지 방 세	57,835,000	53,673,000	4,162,000	7.7
세 외 수 입	69,591,341	63,836,959	5,754,382	9.0
지방교부세	45,284,700	42,146,000	3,138,700	7.4
지방양여금	27,081,692	27,081,692	0	-
조정교부금	29,479,200	25,959,200	3,520,000	13.5
보 조 금	74,819,206	75,070,577	△251,371	△0.3
지 방 채	5,000,000	5,000,000	0	-

< 특별회계 >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과 9개 기타 특별회계 중 금번 추정에는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모두 5억 2,20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억원, 주택사업 2억 3,922만원, 의료보호 8,074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1억 212만원 등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약 0.7%에 해당하는 세입액이 증액되는 것임.

세출예산

< 일반회계 >

○ 일반회계 추정 세출예산액은 총 3,090억 9,1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163억 2,3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기능별 세출내역은

- 일반행정비 639억 1,018만원으로 1억 4,205만원이 늘었고
- 사회개발비 1,449억 1,346만원으로 51억 4,468만원이 늘었으며
- 경제개발비 806억 8,223만원으로 110억 2,000만원이 증액됐고
- 민방위비 9억 6,002만원으로 1,6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지원 및 기타경비 136억 2,525만원으로 증감이 없음.

【 일반회계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3년도 제2회 추경안	구성비	2003년도 제1회 추경안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09,091,139	100	292,767,428	100	16,323,711	5.6
일반행정비	63,910,176	20.7	63,768,125	21.8	142,051	0.2
사회개발비	149,913,459	48.5	144,768,782	49.4	5,144,677	3.6
경제개발비	80,682,230	26.1	69,662,222	23.8	11,020,008	15.8
민방위비	960,020	0.3	943,045	0.3	16,975	1.8
지원및기타경비	13,625,254	4.4	13,625,254	4.7	0	0

< 특별회계 >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과 기타 3개 특별회계에 모두 5억 2,20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편성내용으로는

- 의료보호 특별회계 : 기정예산 대비 8,075만원이 증액된 6억 4,2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전입금으로 대부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편성하고

- 주택사업 특별회계 : 증액재원 2억 3,922만원은 주택사업 민간융자금 수입으로써 지방채 차입원금 상환에 계상되었으며,
-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 기정예산 대비 1억 212만원이 증액된 6억 243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새마을 소득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영업수익인 상수도급수공사 수입이 1억원 늘어남에 따라 급수공사 등 영업비용에 계상하고 아울러 4억 1,630만원의 예비비로 원수 및 취·정수비, 급수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에 3억 4,189만원과 구축물, 공구비품구입 등 가동설비자산에 1억 7,4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 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2003년 제2회 추경안	2003년 제1회 추경안	증·감액(증감율)
합 계	71,470,940	70,948,857	522,083(0.7)
의료보호	642,862	562,117	80,745(14.4)
주택사업	1,986,126	1,746,906	239,220(13.7)
새마을소득사업	602,429	500,311	102,118(20.4)
기타6개 특별회계	12,512,851	12,512,851	0
상수도사업	55,726,672	55,626,672	100,000(0.2)

II. 검토의견

일반회계

< 세입예산 >

- 기정예산 대비 약 5.6% 규모인 이번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액은 총 163억 2,371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 41억 6,200만원(25.5%), 세외수입 57억 5,438만원(35.2%), 지방교부세

31억 3,870만원(19.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5억 2,000만원(21.6%), 국·도비보조금 2억 5,137만원(1.5%)으로 편성되었으며,

○ **제원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60.7%(99억 1,638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9.3%(64억 733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그간의 상임위 심사활동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세외수입중 골제채취 판매수입 감액건으로 제1회 추경에서 당초 본예산 대비 146%가 증액된 29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있으나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5억 9,6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당초계획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금번 수정된 목표액(35억 4,300만원) 만큼은 달성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중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5억 4,357만원이 사업포기로 사업비 반납을 위해 감액된 건으로써 이와 같이 일정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치밀한 계획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방세와 수수료의 경우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세출예산 >

○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 163억 2,371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배분 내역은

- 법적·의무적 기준경비 : 공공요금,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출연금, 운수업체 보조금 등

25억 9,577만원

- 시 자체사업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경로당운영비, 호우피해복구, 민간위탁 대행비 등

26억 8,598만원

- 지방제원(무담금)사업 : 수치지형도 제작, 검산~축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5억 2,000만원

- 국·도비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 23건, 도비보조사업 22건, 당초시비 부담사업 6건 등 51건

30억 1,725만원

- 특별교부세 사업 : 당동~여우고개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

17억 470만원

- 시책추진 제정보진금 사업 : 장단콩 전용축제장 설치, 덕천~담곡리간 도로정비 등 2건

18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의 투자가 약 7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내역(77.5%)과 비슷한 수준임.

-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10.25~10.29 일 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으며, 동 기간중 예산안 심사결과를 요약하면
 -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중 골재채취 판매수입 감액건과 지방세, 수수료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된다고 지적되었으며, 기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 재정보전금으로 추진예정인 장단콩 전용 축제장 시설비에 대해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동 시설비는 건축물 등 축제장 시설비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아울러 상정된 여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따라서, 금번 추경 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 법적·의무적 기준경비 등에 배분·투입하는 것으로써 세출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신규 편성되었거나 증액 계상되었던 예산이 금번 제2차 추경에서 감액 편성되는 사례가 지적되었는바 이러한 사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 운영을 위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금번 추경안에는 4/4분기 초반을 넘긴 시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호우 피해복구사업, 도로확·포장 및 개설공사 등의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45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적절한 사업집행과 효과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의료보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약 0.7% 규모인 5억 2,20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재원은 국·도비보조금과 시비 전출금, 융자금 원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임.
- 세출예산도 특별회계별로 상수도사업은 급수시설비와 원수 및 취·정수비에 계상하고 의료보호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주택사업은 지방채 차입원금 상환에, 새마을소득사업은 당해 소득사업에 편성하는 등 당초의 회계설치 목적사업과 예비비 등에 적정 배분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가동설비자산인 구배수지 건물철거비를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과목 정정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일부 감액 부기를 조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